

#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1일  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 1. 선발예정인원 (1개 직위, 총 10명)

지원코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채용기간	근무예정부서
B	약무주사보(7급)	10명	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	식품의약품안전처(본부),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※ 「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10조에 따른 '직위 군(群)' 선발임

## 2. 주요 업무 분야

※ 담당예정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, 담당예정업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지원코드	임용예정직급	담당 업무
B	약무주사보(7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약품 및 마약류의 재평가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등</li> <li>○ 의약품·의약외품·화장품등 품목(변경) 허가 및 (변경)신고 등</li> </ul>

## 3. 응시자격요건 :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[2022.12.14.(수)] 기준 판단

### 가. 공통요건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)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에 따라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(2002.12.31. 이전 출생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(면접)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
**결격사유**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: [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\[붙임\]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](#)

직급	응시자격요건
약무주사보 (7급)	○ [자격증] 대한민국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

## 다. 응시 관련 유의사항

### <공 통> \* **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[붙임]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**

- 채용 구분별 **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(자격증)**  
 ※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
- **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('22.12.14.) 기준**으로 판단함  
 ※ 최종(면접)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
- **우대요건,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('22.11.11.)**으로 충족한 경우 인정

### <응시자격요건 - 자격증>

- '자격증'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'국내 자격증'을 말하며, 원서접수 마감일 또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-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
-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: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은 자격증은 자격증 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
- **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(예: 운전면허증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 활용능력 등)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말아야 함**

### <우대요건-경력>

- '경력'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, **경력(재직)증명서(근무기간, 휴직기간, 직위(직급), 주 근무시간 명시 및 세부적인 담당업무 명시)를 제출하여야 함**(연차별 차등배점)  
 ※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, **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 인정**  
 ※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휴직기간, 부서, 직위(직급),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**경력이 불 명확할 경우 미인정될 수 있음**에 유의  
 ※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) 별도 첨부(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)  
 ※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
 ※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(연구) 경력은 불인정
- 서류 미제출 또는 **세부 경력 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 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**
-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, ①, ②, ③, ④ 모두 제출
  - ①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 제출
  - ②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(예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제출
  - ③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텍스) 제출
  - ④ 폐업사실 증명서(국세청 홈텍스) 제출
 ※ 서류 확인 과정에서 폐업되지 않은 기관(기업·단체)의 경력에 대해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'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
 ※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
### <우대요건 - 학위>

- '학위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별 차등 우대

### <우대요건 - 어학>

- '외국어(영어) 성적' 및 '국어능력시험 성적'의 경우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,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※ '20년 12월 17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함'
  -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되며, 인정되는 외국어(영어) 및 국어능력 시험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

### <가산점> \* 가산점 관련 상세내용은 하단 '8. 가산점 적용' 참고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시 차등 우대
  - ※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(2019. 1. 1.)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
- 취업보호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 : 응시자 중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만점의 일정 비율(10%/5%/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
## 4. 근거 법령

-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임용시험령,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(인사혁신처 예규) 등

## 5. 시험 방법

###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
  - \* 서류전형기준 : 발전가능성(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),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, 학위, 어학성적 등 우대요건 및 가산점[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]

- ✓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(온라인)
  - 목적 : 공직가치관 및 위기대응능력 사전 검증
  - 검사 결과는 면접위원회에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

### 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 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개인발표(5분 스피치)\* 이후 면접위원과 서류전형 합격자간 질의·응답을 통한 종합평가(30분 이내)
    - \* 개인발표(5분 스피치) 과제 작성·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장 이동 전 별도장소에서 진행(20분)